

2020년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제1강 -한국사회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

강연: 이슬

녹취정리: 고일해

이 강좌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청구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2020년 3월 27일에 회신 받은 법무부 난민과의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먼저 출입국항 회부율을 보겠습니다. 출입국항 회부율이란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난민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공항과 항만 즉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회부심사를 먼저 진행하여 난민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출입국항에서는 188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단 6.9%인 13건 그러니까 13명만 입국하여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회부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로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한국 정부는 출입국항에서부터 실질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난민신청의 기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88명 중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난민신청자들은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국으로 송환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절차는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진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를 92% 이상 본심사도 진행하기 전에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난민신청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최장기 1차 심사 결정 기간은 46개월 6개월 안에 1차 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야 한다. 라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기 위

해서 난민신청자들은 3년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19년 3번 이상 심사 기간 연장을 통보받은 신청 건은 4,974건으로 이것은 2019년 전체 신청자 15,452명 중 32%에 해당합니다.]

[심사 단계별 인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1차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이 법무부에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신청에 대한 심사 그리고 이 1차 신청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한 2차 심사 그리고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이의신청까지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로 보시듯이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19년에도 법무부 1차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의 1.2% 법무부 2차 심사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전체의 0.08%였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에서 한국의 심사 단계별 난민인정 비율이 매년 1~2%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턱없이 모자란 난민심사 담당관의 숫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난민심사 담당관은 총 65명 얼핏 보면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15,000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심사관들은 연간 1인당 평균 121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하기로는 굉장히 까다로우며 심도 있는 인터뷰와 심도 있는 조사가 여러 차례 뒷받침되어야 하는 난민인정 심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21건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는 딱 6번 그리고 분과를 나누어 개최되는 위원회는 12번 열렸습니다. 심사관들은 한 회의 동안 최대 1,171건의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1,171명의 난민인정 심사가 한 번에 진행된 겁니다.]

[이러니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늘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9,286건 중 0.4% 2019년에는 42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권 국가라 불리는 한국에서 참담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국가 출신일까요? 미얀마 출신 335명 에티오피아 출신 131명 방글라데시 출신 119명 등으로 1,022명입니다. 인도적체류자 즉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본국으로 송환될 시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법무부 재량의 지위는 시리아 출신자에게 1,197명 예멘 출신의 사람들에게 647명 등으로 2,203명입니다.]

[2019년에 난민신청자들은 어떤 사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았던 신청 사유는 종교로 3,792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순서대로 정치적 이유, 특정 사회 집단 즉 소수자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 인종으로 인하여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뒤를 이었고 한국의 난민인정받은 가족이 있는 경우 함께 난민인정받게 되는 가족 결합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378명 있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국제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특히 기타 사유는 벌써 오래된 국제 난민 협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유 예를 들면 기후위기 등으로 본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기타 사유로 난민신청할 경우 협약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청자 중 취약계층의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누적된 18세 미만 아동의 난민신청은 2,942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청 건수는 14,845건 65세 노인의 신청은 56건 있었습니다.]

[신청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긴 긴 시간 속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요? 난민법은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겠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취업이 금지되고 생계를 이어갈 어떠한 방편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생계비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총 542명 이것은 전체 생계비 지원 대상자 20,988명 중 단 2.5%에 해당합니다. 6개월간 지급한다는 법령이 무색하게 평균 지원 기간도 3.2개월이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97.5% 2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을까요?]

[생계비가 이런 문제를 가득 끌어안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신청자들의 생계비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 심사에서 신청자들의 생계비는 국회의원과 법무부의 뒷전에 놓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재정착 난민 그러니까 UN 난민기구에서 심사하여 난민인정받은 사람 중 한국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제도에는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2억이 넘는군요. 재정착 난민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얼마만큼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난민인정자에게는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니다. 표에 보이는 주택 보조 같은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같은 한국에서 난민신청하여 인정받은 인정자와 재정착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인정자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난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즉 난민센터에는 한 해 동안 84명의 입소자가 있었습니다. 센터는 신청자들의 주거와 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국제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신청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정원이 2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입지와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손에 꼽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재정착 난민들이 주를 이루는군요. 이곳은 재정착 난민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신청자라는 체류 자격이 취업 허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신청자가 늘어날수록 체류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에는 15,452명이 난민신청했습니다. 난민인정받은 79명의 난민은 2019년의 신청한 사람 중 인정자가 아니라 이전에 인정을 신청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 인정받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019년 난민인정률은 0.4%입니다.]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난민신청은 총 64,358건에 달이 강좌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청구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2020년 3월 27일에 회신받은 법무부 난민과의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015명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누적 인도적체류자는 총 2,203명입니다.]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4년 거의 유일한 난민지원단체였던 사단법인 피난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로 ‘국내 외국인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황우여의원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국회인권포럼에서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 중심으로 2006년부터 난민활동가와 변호사들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월례모임②을 꾸려 난민법 제정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난민법 제정운동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도 당시 난민실을 중심으로 2005년 9월 난민법제·개정위원회를 만들어 난민법 안을 만들었고, 이는 난민법 초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을 하였고, 같은 해 5. 25.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리고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방문, 전문위원과 발의 의원실 보좌관들과의 면담, 대한변호사 협회를 통한 의견개진, 대표발의자인 황우여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난민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등의 노력과 상황으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하며 난민법 제정을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으로 여기고 홍보하였다. 2013년 6월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고,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되었으며, 9월에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완공하였고, 10월에는 한국이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④.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난민법은 제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처음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법안에서 많은 부분 수정이 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제정 당시부터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⑤. 대표적으로 출입국항 난민 신청에 관한 조항(난민법 제6조), 간이절차 규정(난민법 제8조 제5항),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처우 규정 미비(난민법 제39조-제44조) 등이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우려는 난민법 시행 후 거의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경우 난민심사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적격성 심사절차는 사실상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의신청 등 신속한 구제절차의 부재와 열악한 처우가 여러 사례를 통해 심각한 문

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인도적체류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기초생활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처우의 문제점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201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보고서(2016) 등을 통해 사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2015년-2016년 사이 출입국항 제도를 개선하는 안, 인도적체류자 처우를 개선하는 안, 난민심사과정에서 당사자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등의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⑥. 이와 같은 난민법 개선의 움직임들은 2015년 말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과에 시리아 난민이 이용되는 등 국가안보 프로파간다에 휩쓸려 통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은 2018년 7월, 예멘 난민 제주입국을 계기로 ‘난민’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여론을 명분 삼아 일부 국회의원들은 난민법 폐지 내지는 개악의 카드를 들고 나섰다. 난민법 폐지안에서부터, 강제송환을 행정청의 재량 하에 용의하게 하는 안, 난민심사회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안, 난민심사기간을 줄이자는 안, 난민인정자 처우 축소하고 난민신청자 생계비 및 교육보장 삭제하자는 안 등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난민법의 목적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여러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법무부는 난민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재신청 등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성 심사를 거치게 하고 부적격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기회를 제한하고 출국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라는 분류를 만들어 마찬가지로 불복의 기회를 제한하고 출국조치를 하는 것 등 난민심사를 받

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2) 강제송환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 3) 출석요구 2회 불응시 난민신청 철회를 간주하고, 난민심사 과정에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시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협조의무를 강조하고, 불이행시 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돌리거나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규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근거규정 마련, 인도적체류자의 취업지원 근거규정 마련,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 확대 등 처우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된 안을 내놓고 있지만,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법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 등 관계부처들에서도 정부의 난민법안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난민법 시행 이후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난민심사 적체가 심화되면서 법무부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충과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갖추는 방안은 제쳐두고 이미 어떻게 하면 심사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2017년 초반까지 심사적체 해소TF를 운영하여 간이면접 대상자(난민법 제8조 제5항)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구체화하여 신속심사를 지시하였다. 이 대상자에는 ‘족장승계, 컬트’ 등 대표적으로 난민사유에 해당하는 유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난민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대상자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충실한 난민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조서가 조작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사적체 해소TF가 문제시되자 이번에는 탈법적으로 재신청자 등 일부 유형의 난민신청자에 대해 ‘남용적 난민신청자’라는 낙인을 붙여 법적인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출국기한 유예 등 ‘사실상 쫓아내지는 않아서 체류가 가능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체류를 하도록 하는 심각한 체류제한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출국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해 면접조서가 조작된 피해자도,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도 모두 ‘재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ID카드를 빼앗기고 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체류제한을 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와 같은 탈법적인 체류자격의 박탈과 심사기회의 제한을 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들의 위법한 관행들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은 방기한 채로 ‘신속’이라는 미명 하에 난민에 대해 문을 닫고, 열심히 쫓아내기 바쁜 출입국의 실무관행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난민법은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난센은 정부와 정치권의 거대한 난민법 개악의 움직임을 막는 것을 올해의 의제로 삼아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심정으로 여러 작은 활동들을 펼쳐왔다. 난민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여기며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자기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담아 법무부장관에게 편지를 쓰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난민신청은 권리다’ ‘국경 속의 국경세우기를 멈춰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예외는 없다’ ‘하자투성이 난민법 리콜’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움직였고, 여러 강연 등의 기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난민법과 난민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진영에서 난민법 개악반대 의제에 먼저 연대의 손을 내

밀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무국 활동가가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점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주제를 이야기 하고, 또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여주었다.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명을 받아서 우편봉투에 소중히 보내주시는 서명용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젠가는 이 계란들의 힘이 바위를 가르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난민법안은 추진은 아직 입법 예고도 되지 않은 채 입안 당시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그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계속해서 난민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

출처: <https://nancen.org/1963> [난민인권센터]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2020년은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 2월 10일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30여년 가까이 난민정책을 운용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정부에 누적 접수된 난민 신청은 64,358건으로, 전 세계 난민 신청의 0.4%(15,452건)를 차지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79명으로, 재정착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37명을 제외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된 이들은 단 42명에 불과, 사상 최악의 인정률을 기록했다. 더 불어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데 최소 평균 5년, 최장기 20여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린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심사 적체와 바늘구멍 보다 뚫기 어려운, 자의적이고도 까다로운 난민 심사의 벽 앞에서 생존의 위협을 감내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는 무삽(MUSAB)을 만났다. 그는 본국에서 인권 활동을 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피해 어렵게 한국 땅에 도착했다. 우여곡절 끝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야만 했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면접 기록을 허위로 기술한 것이다. 인권활동가로 박해의 위협을 피해 왔다는 그의 진술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조작되었다.]

[2015년 법무부는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TF를 운영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졸속심사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공무원과 통역인은 면접기록을 조작하는 범죄를 공모했다. 무삽은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자 2년 넘게 고군분투 해왔다. 결국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단4294),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45 사건) 법원은 ‘난민면접조사가 당사자의 실제 진술과 달리 그 취지가 왜곡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난민면접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난민면접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법무부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무삽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삽은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삽은 난민 인정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을 받았을 뿐, 난민 인정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출입국, 법무부, 구청, 주민센터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언어의 장벽과 정책 공백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정책 공백의 문제로 제3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1,015명의 난민 인정자와 관련하여 매년 단 1원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난민법>은 제30조 이하에서 난민 인정자의 처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법령의 범위나 주무 부처의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부분의 사회정책에서 난민 인정자는 배제되고 있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난민 인정자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여부를 가늠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관할부처는 난민 인정자가 어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인정을 받은 장애아동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 권고를 했고, 이후 법과 지침이 개정되어 서비스 공백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난민

인정자는 아직도 주거, 의료, 노동, 교육, 아동, 귀화 등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각종 권리로부터 단절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에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신분조차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딸을, 제 딸이라고 증명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한 난민 인정자의 토로다. 사람이 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여러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결혼·이혼은 언제 했는지, 교육이나 기술자격증은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은 본국과 관계가 단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 조치로부터 당국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정부는 <난민법> 30조와 난민협약 25조 등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증명서 등의 행정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난민인권연구회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 대부분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구나 심사 등의 이유로 타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본국에서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이들에겐 여권도 없다. 난민 인정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행 증명서 또는 난민 인정증명서 등을 사용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송금, 비밀번호 변경, 계좌 신설, 카드 발급 등의 기본적인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체류 연장 및 출입국 업무, 인감증명 발급 등의 모든 행정적 절차에서 신분 증명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에 어려움 자녀의 핸드폰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학급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기도 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난민 인정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출산, 혼인, 이혼, 파양 등의 가족 확대 및 변경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기재, 관리하는 기준과 체계가 없어 가족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증명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혼인 과정에서도 미혼증명이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려우며 본국에서의 학력/범죄경력 조회 및 사망 증명 조회 등이 어려워 취업 등의 무수한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삽은 가족들과 스스로 막막한 상황을 헤쳐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최근에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고군분투하던 그는 올해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앞에 다시 한번 “나는 한국사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는 무삽의 글이다.]

[동 주민센터의 직원이 “당신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원을 못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가 ‘당신은 지원받을 대상인지’,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갈라내는 분류와 배제의 벽이었다. 소속감. 우리는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사회 안에 있는가, 여전히 밖에 있는가?]

[나는 난민 인정자로 현재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이후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 재난지원금 소식을 알게 되어 찾아갔을 때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자체를 주기를 거부했다. 이주민을 아주 쉽게 배제하는 법과 정책들을 목격할 때마다 느끼는 것

은 한국 정부는 한국 땅에 서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만 같다.]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의 사회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무부 역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난민 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코로나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난민과 이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늘 소외되어 있다. 인권운동가로 10년을 살아온 나의 경험에 따르면 이처럼 누군가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난민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에 기초해 대상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어진 비자발적인 이주자이고, 많은 이주노동자는 지난 수년간 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주소를 등록하여 살아가고 있고,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난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인데, 한국 사회 안에서 사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이 효과에 있어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재난지원금은 이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매우 큰 ‘지지’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되기도 한다. 한국 시민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고, 지원하는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익을 먼

저 생각하는 본능을 이겨내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인권의 본질인 것 같다.]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인 8월이 되기 전에 정책이 빨리 바뀌기를 희망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정부가 난민,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에 상관없이 동시대에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도록, 하루 빨리 이 정책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 무삽 (MUSAB)]

[무삽이 직면한 것은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난민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공색한 핑계로 난민 정책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장 20년까지 걸리는 난민 심사 절차를 현실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심사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난민과 인도적체류자의 정착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적 절차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무엇보다 난민 신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난민법> 제정 7년, 한국에서 더는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제2, 제3의 무삽이 나와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nancen.org/2066> [난민인권센터]